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계약 목적)

1. 서부재가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재가센터와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센터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4조(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종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율의 변동이 있을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4)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 5)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5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 또는 6%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준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20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5년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방문시간	25년 수가	본인부담금			
		일반	감면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15%	9%	6%	0%
30분	16,940원	2,541원	1,525원	1,010원	0원
1시간(60분)	24,580원	3,687원	2,212원	1,475원	0원
90분	33,120원	4,968원	2,981원	1,987원	0원
2시간(120분)	42,160원	6,324원	3,794원	2,530원	0원
150분	49,160원	7,374원	4,424원	2,950원	0원
3시간(180분)	55,350원	8,303원	4,982원	3,321원	0원
210분	61,670원	9,251원	5,550원	3,700원	0원
4시간(240분)	68,030원	10,205원	6,123원	4,082원	0원

**요양등급 3-4등급의 경우 최대 3시간/회 서비스 가능(4등급경우 최대 월24회 가능)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 적용, 본인부담금 15% 적용

2)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3)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방문목욕 급여비용

-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분 (요양보호사 2인기준)	25년 수가	본인부담금			
		일반	감면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15%	9%	6%	0%
방문목욕 차량을 이 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7,304원	4,382원	2,922원	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 한 경우 (가정내 목욕)	77,970원	11,696원	7,018원	4,678원	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 한 경우 (차량내 목욕)	86,480원	12,972원	7,783원	5,189원	0원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 적용, 본인부담금 15% 적용

-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의 경우

- 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 나)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시설을 갖춘 시설에 이용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이용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영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6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2)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1회 미납시: 전화상담, 2회 미납시: 방문상담)
단, 상호협의 및 합의하에 3회이상 연체시에는 예외로 한다.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